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거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3. 3. 22(수) 10:00

제24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토보고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문화환경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307호

나. 제 출 자 : 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3. 3. 10.

라. 회부일자 : 2023. 3. 10.

2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도서관법」의 전부개정(법률 제18547호, 2022. 12. 8. 시행)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구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독서증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(안 제1조, 제3조, 제7조, 제14조, 제1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서관법」제29조, 제34조제2항, 제45조, 제47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합의기관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
2) 입법예고: 2023. 2. ~ 2023. 3. (20일 이상)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도서관법」의 전부개정(법률 제18547호, 2022. 12. 8. 시행)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나. 주요 내용

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(안 제1조, 제3조, 제7조, 제14조, 제19조)

- ·제1조 중 "「도서관법」제27조"를 "「도서관법」제29조"로 한다.
- ·제3조제1항 중 "「도서관법」제27조"를 "「도서관법」제29조"로 한다.
- ·제7조제2항 중 「도서관법시행령」제4조"를 "「도서관법」제45조"로 한다.
- 제14조제1항 중 "「도서관법」제9조"를 "「도서관법」제47조"로 한다.
- ·제19조제1항중"「도서관법」제30조제2항"을"「도서관법」제34조제2항"으로 하다.

다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상위법 「도서관법」의 전부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「도서관법」

[시행 2022. 12. 8.] [법률 제18547호, 2021. 12. 7., 전부개정]

제29조(공공도서관의 설치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·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·육성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·군·구(자치구인 구를 말한다)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·공립 공공도서관은 "도서관"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야 하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·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.
-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· 운영할 수 있다.

제34조(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)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.

-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5조(도서관 인력·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)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,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 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-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,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·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·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